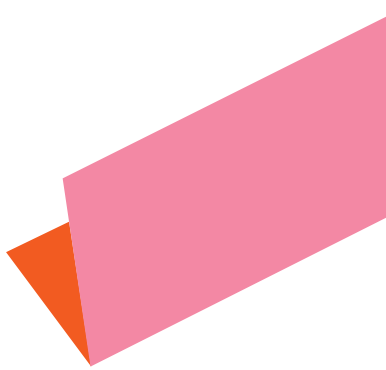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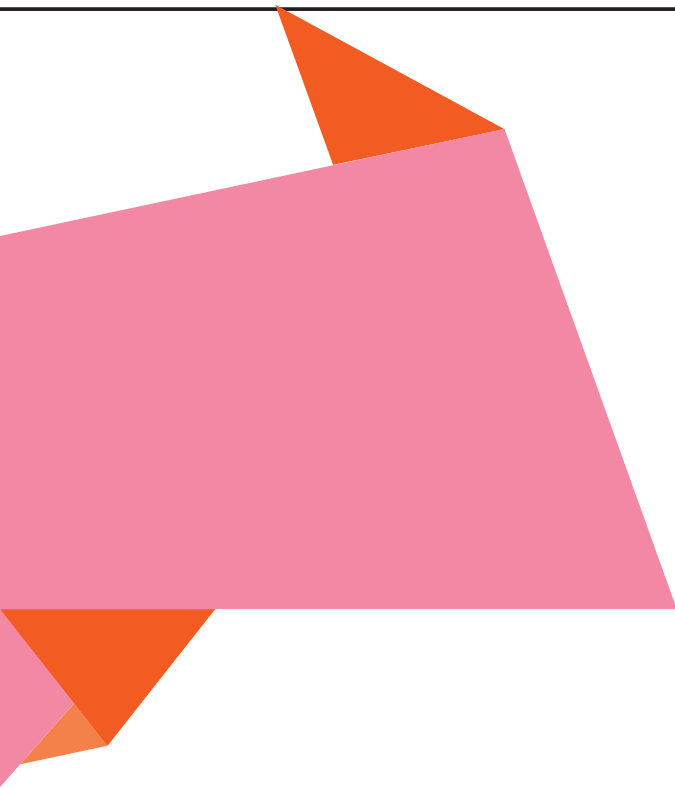




(사)가족기업학회 2024년도 제1차 이사회 및 총회



2024. 4. 25



목 차

I. 개회선언	5
II. 회장인사	5
III. 경과보고, 사업보고, 결산보고	5
1. 경과보고	
2. 사업보고	
3. 결산보고	
IV. 회비 및 임원 분담금 현황	17
1. 회비집계표	
2. 평생회비 납입 명세서	
3. 회원가입 및 입금계좌 안내	
V. 의결안건	20
의안 1. 『가족기업 학술상 및 가족기업경영대상 시상 규정』 일부개정의 건	
의안 2. 감사선임의 건	
VI. 임원 현황과 임원 위촉	21
1. 임원 현황	
2. 임원 위촉	
3. 위원회 현황	
VII. 상장수여	28
1. 최우수 논문상	
2. 최우수 발표논문상	
3. 우수 발표논문상	
VIII. 공지사향, 회원동정 및 기타 논의사항	29
IX. 폐회	29
[별첨 1] 『가족기업 학술상 및 가족기업경영대상 시상 규정』 (전문) ..	30
[별첨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33

[별첨 3]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호서대학교) ...	36
[별첨 4]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한양대학교)	43

I. 개회선언

회의를 이사회와 총회로 각각 개최하지 않고 함께 진행합니다. 본 학회 2024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 의결사항을 총회에 회부하고 총회에서 이를 의결을 해야 함이 원칙이나 이번 회의는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이사회 의결로 마무리할 의안이 총회에서도 의결됩니다.

II. 회장인사

III. 경과보고, 사업보고, 결산보고

1. 경과보고

1) 2021년 학회설립 관련 안내

- 02. 25. 사단법인 가족기업학회 인가(중소벤처기업부)
- 03. 25. 사단법인 가족기업학회 법인 등기
(법인등록번호 : 131421-0008856)
- 04. 02. 고유번호증 발급(국세청 고유번호 147-82-00265)
- 06. 16. 춘계학술대회(창립총회, 중소기업중앙회)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 개최
- 06. 16. 사단법인 가족기업학회 현판식(장소: 경기도 안산시)
- 12. 31. 공익법인 지정 등록(승인)(주무부처: 기획재정부)

2) 2023년도 제2차 이사회 및 총회 의결사항 보고

- 개최일시 : 2023.11.30.
- 개최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
- 『가족기업연구』 편집규정 일부개정

- ▶ 『저작권법』 제45조(저작권재산권의 양도) 및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국립중앙도서관)의 권고에 따라 『가족기업연구』 편집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현행	개정	비고
제32조(논문의 출판권과 복사권·공중전송권·배포권의 양도) ① 논문의 출판권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사단법인 가족기업학회가 갖는다. ② 논문의 저자(들)는 논문에 대한 복사권·공중전송권·배포권을 사단법인 가족기업학회에 양도하며, 만일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게재신청을 가족기업연구에 할 수 없다.	제32조(논문의 권리와 이익, 저작권의 양도) ① 삭제 ② 논문의 저자(들)는 논문에 따른 권리와 이익,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 행사 등을 (사)가족기업학회에 양도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가족기업학회가 발행하는 『가족기업연구』에 게재할 수 없다. ③ 논문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는 [별첨 1]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논문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

논문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 논문제목(Title of the Manuscript) 국문 : 영문 : 저자(들)는 본 논문이 (사)가족기업학회의 가족기업연구에 게재되기를 희망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1. 저자(들)는 본 논문이 창의적이며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저자(들)는 본 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함께 합니다. 3.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되었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습니다. 4. 본 학회지의 발행인은 저자(들)의 허락 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

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5. 저자(들)는 본 논문이 가족기업연구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에 따른 권리와 이익,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 행사 등을 (사)가족기업학회에 양도합니다.

년 월 일

저자	이름	소속 및 직함	이메일	전화번호	서명
주저자				휴대폰: 직장:	
공동저자1				휴대폰: 직장:	
공동저자2				휴대폰: 직장:	
공동저자3				휴대폰: 직장:	

(사)가족기업학회장 귀하

- 연구윤리 교육
 - ▶ 최근 매우 강화되는 연구윤리에 적극 부응하는 “사이버 연구윤리 학습 매뉴얼” 교육 실시

3) 2023년도 학회운영 경과보고

- 01. 01. 제2대 회장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윤병섭 교수 취임
- 01. 14. 인수인계(산들해반포) 남영호 전임회장, 윤병섭 회장 외
- 02. 07. 등기, 고유번호증, 통장 등 변경
- 02. 24. 중소기업부 결산보고
- 04. 12. 공익법인전용계좌신고(안산세무서)
- 04. 27. 춘계학술발표대회 개최(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
- 05. 02. 공익법인(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및 출연재산보고서 제출(안산세무서)
- 06. 30. 2023년 가족기업학회 뉴스레터 발간(No.2023-1 Vol.1)
- 11. 28. 홈페이지 개편 완료
- 11. 30. 추계학술발표대회 개최(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
- 12. 31. 2023년 가족기업학회 뉴스레터 발간(No.2023-2 Vol.2)

4) 2024년도 학회운영 경과보고

- 02. 17. 중소벤처기업부에 “2024년도 취업심사대상 소관 협회 명세서 (비영리법인 명세서)”, “사기업체 등이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 명세서” 제출
- 02. 19. 중소벤처기업부에 2023년 사업실적 및 2024년 사업계획 보고
- 03. 16. 2024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모집 안내
- 05. 초순경. 공익법인(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및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예정(안산세무서)
- 06. 30. 2024년 가족기업학회 뉴스레터 발간 예정(No.2024-1 Vol.1)
뉴스레터 발간 목적 : 회원 간의 유대관계 강화 및 학회 활성화
[당부의 말씀] 회원 소식을 보내주시면 뉴스레터에 담겠습니다.

2. 사업보고

1) 2023년도 학회지발간(『가족기업연구』 제2권 1호, 2호) 사업

- 02. 28. 연구 논문 지원 사업 공개 모집
 - ▶ 공모주제 : 가족기업과 관련된 모든 주제(가업승계, 장수기업 등 모두 포함)
 - ▶ 공모대상 : 가족기업학회 전 회원(비회원은 회원가입 후 가능)
대학원생, 연구원, 컨설턴트, 교수 등 모두 포함
 - ▶ 공모기간 : 2023. 06. 8(금) 까지
 - ▶ 공모과제수 : 총 5편
 - ▶ 지원금액 : 과제당 백만원(총 5백만원)
- 10. 19. 연구 논문 지원 사업 공개 모집
 - ▶ 공모주제 : 가족기업과 관련된 모든 주제(가업승계, 장수기업 등 모두 포함)
 - ▶ 공모대상 : 가족기업학회 전 회원(비회원은 회원가입 후 가능)
대학원생, 연구원, 컨설턴트, 교수 등 모두 포함
 - ▶ 공모기간 : 2023. 12. 8(금) 까지
 - ▶ 공모과제수 : 총 6편
 - ▶ 지원금액 : 과제당 백만원(총 6백만원)

2) 2024년도 학회지발간(『가족기업연구』 제3권 1호) 사업

- ▶ 공모주제 : 가족기업과 관련된 모든 주제(가업승계, 장수기업 등 모두 포함)
- ▶ 공모대상 : 가족기업학회 전 회원(비회원은 회원가입 후 가능)
대학원생, 연구원, 컨설턴트, 교수 등 모두 포함
- ▶ 공모기간 : 2024. 06. 14(금) 까지
- ▶ 공모과제수 : 총 6편
- ▶ 지원금액 : 과제당 백만원(총 6백만원)

3) 2023년도 학회지발간(연 2회(6월, 12월) 발행)

- 2023. 06. 30. 『가족기업연구』 제2권 제1호 발간(총 5편 수록)
 - ▶ 8편을 16명의 심사위원이 심사하여 5편을 게재확정
- 2023. 12. 31. 『가족기업연구』 제2권 제2호 발간(총 5편 수록)
 - ▶ 8편을 16명의 심사위원이 심사하여 5편을 게재확정
 - ▶ 취디(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사과정)·토국후 간치맥(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사), “사회경제적 요인이 가족기업의 과세관청과 세무행정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 과세관청의 징세권 행사와 공평한 세무행정에 대한 인식수준을 중심으로”.
 - ▶ 최영(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경영학과 박사 수료)·몽흐바 야르 아즈자야(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석사), “기업의 환경보호 기부와 세금납부 의향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 분석”.
 - ▶ 전덕영(서울신용보증재단 책임전문위원), “유가증권시장 가족기업의 ESG성과와 기업특성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 ▶ 하석광(한국표준협회 수석전문위원)·허호영(오스텍(OSTEC) 대표이사), “비인격적 감독이 개인성과에 미치는 영향: 상사갈등, 조직침묵, 일탈행동의 매개효과”.
 - ▶ 강무성(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벤처경영연구소 연구위원)·서영택(대진실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여유자원 있는 가족기업의 가족구성원 참여가 미치는 기술혁신 지향성”.

4) 2023년도 학술상 수여 보고

- 04. 27. 『가족기업 학술상 및 가족기업경영대상 시상 규정』 제정
- 11. 30. 포상위원회(위원 7명)의 심의를 거쳐 학술상 시상(상장 수여)
 - ▶ 최우수 논문상
강무성(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벤처경영연구소)·서영택(대진실업주식회사), “스타트업 가족기업의 정부R&D 지원과 지식재산권 창출 효과”.
 - ▶ 최우수 발표논문상
최다인(조선대학교), “가족기업의 급진적 혁신 지향성과 경영성과”
 - ▶ 우수 발표논문상
김철훈(유안타증권), “거래 HNWI 상속 및 증여세 개선방안”

5) 학회지발간 사업 활성화 및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등록 준비

- 2022년 하반기 ISSN 등록(ISSN 2951-4010)
- 04. 27. 2023년도 제1차 이사회 및 총회에서 편집위원회 승인
 - ▶ 위원구성 요건 충족: 8명(해외 2명, 서울 1명, 대구 1명, 경남 1명, 충북 1명, 전북 1명, 부산 1명)
- 06.28. 편집위원회 통장 개설해 사무국 통장과 분리 운영
- 06. 30. DOI 계정 승인(할당된 접두사 10.23204)
 - ▶ 2023. 06. 30. 『가족기업연구』 제2권 제1호 발간부터 적용
 - ▶ 승인기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DOI센터
 - ▶ DOI의 정의 : 온라인상의 디지털 콘텐츠에 부여하는 알파벳+숫자 기호 체계인 디지털 객체 식별자(Digital Object Identifier: DOI)
- 11.16. 학술지 저작권 등록
 -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학술지 저작권 안내시스템(KJCI)에 등록(조건부 등록)
- 11.30. 『가족기업연구』 편집규정 일부개정(저작권정책 등록)
 - ▶ 2023.11.30. 2023년 제2차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의결
 -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학술지 저작권 안내시스템(KJCI)에 등록 완료

- 12.31. (사)가족기업학회 개편 홈페이지에 발표논문, 게재논문 탑재
 -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DOI센터가 승인한 DOI 계정(할당된 접두사 10.23204)에 의거 논문 열람 가능

6) 2023년도 학술행사(추계학술발표대회) 사업 진행 현황

- 일시 : 2023년 11월 30일(목) 09:30~16:00
-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여의도) 상생룸, 창의룸, 비전룸(2F)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 대주제 : 명문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승계 정책방향
 - ▶ 개회사 : 윤병섭 학회장
 - ▶ 환영사 : 정재연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위원장
 - ▶ 기조발제 :
 - 추문갑(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 명문장수기업 현황과 제도 보완과제
 - 김한수(경기대학교 교수)
 - 기업승계 사업무관자산 범위 개선방안
 - ▶ 지정토론 :
 - 좌장(정재연 한국세무학회장)
 - 토론(발제자 2명, 토론자 4명)
 - 김한수 교수(경기대)
 -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중소기업중앙회)
 - 조용규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 박세웅 세무사(세무회계 선우)
 - 김효진 전무(동일전선주)
 - 최두찬 한국기업승계기업협의회 정책위원장
- 발표논문 : 4개 Session, 12편 논문발표
 - ▶ 좌장 : 4명/ 발표자: 14명/ 토론자: 12명
- 후원 : 중소기업중앙회, IBK기업은행
- 협찬 : 한국부동산원, (주)서전엔지니어링, 경남개발공사,
(주)한컨설팅그룹, (주)선진이앤에스, (주)이노플렉스

7) 2024년도 학술행사(춘계학술발표대회) 사업 진행 현황

- 일시 : 2024년 04월 25일(목) 13:00~17:50

-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여의도) 상생룸, 비전룸, 창의룸(2F)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 대주제 : 가족기업의 지평, 그 다양성
 - ▶ 개회사 : 윤병섭 학회장
- 발표논문 : 7개 Session, 19편 논문발표
 - ▶ 좌장 : 7명/ 발표자: 20명/ 토론자: 21명
- 후원 : 중소기업중앙회, IBK기업은행
- 협찬 : 한국부동산원, 경남개발공사, 정엘의 가업승계연구소

(사)가족기업학회 2024년도 춘계 학술대회: “가족기업의 지평, 그 다양성”

구분	시 간	내 용
	13:00~13:30 (30')	등록 및 접수
개 회 식	13:30~13:40 (10')	사회: 이지연 사무국장 [개회] 참석자 소개 등 [개회사] 윤병섭 회장 ((사)가족기업학회) [사진촬영]
세 션 I	13:40~14:30 (50')	[발제] 가족기업의 성공승계 전략 조병선 원장 (한국가족기업연구원) [토론] 좌장: 동학림 명예교수 (호서대학교) 토론: 김지희 교수 (Canisius College) 박화선 실장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 여상훈 실장 (주빅드림)
휴식	14:30~14:40 (10')	휴식
세 션 II	14:40~14:55 (15')	[발표 ①]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소통의 기술 정선의 소장 (정엘의 가업승계연구소)
	14:55~15:10 (15')	[발표 ②] 코칭이 가족기업 승계 과정에 미치는 영향: 후계자 역량 강화 관점 이현수 부사장 (엑셀리스코리아주)
	15:10~15:25 (15')	[발표 ③] 코칭리더십, 긍정심리자본, 조직몰입 및 혁신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 대상 조한나 대표 (주웨이브컴퍼니)
	15:25~15:40 (15')	[발표 ①], [발표 ②], [발표 ③]의 토론 좌장: 박천경 교수 (경희대학교) 토론: 백지은 교수 (경희사이버대학교) 김용구 교수 (광신대학교) 조면기 대표 (MG세무조사컨설팅)

세 션 III	14:40~14:55 (15')	[발표 ①]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조달능력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술혁신역량, 기술사업화역량의 매개효과와 4차 산업혁명 기술기업의 조절효과 김정향 부장 (기술보증기금)
	14:55~15:10 (15')	[발표 ②] 명문장수기업으로 가는 길: (주)노당기와의 가업승계가 주는 시사점 남호일 대표 (㈜필립상사)
	15:10~15:25 (15')	[발표 ③] 가족기업의 R&D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오너경영, 전문경영 비교를 통하여 여철기 대표 (굿스타트파트너스)
	15:25~15:40 (15')	[발표 ①], [발표 ②], [발표 ③]의 토론 좌장: 김기형 교수 (한양대학교) 토론: 김기형 교수 (한양대학교) 송병호 교수 (건국대학교) 최영 박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세 션 IV	14:40~14:55 (15')	[발표 ①] 장수가족기업 육성 방안: 가족기업 특성 사례 분석 전지연 대표이사 (JY학원)
	14:55~15:10 (15')	[발표 ②] 렌탈구독서비스와 지속사용의도 분석: 생활환경가전 코웨이 사례 진기방 대표이사 (주세스코)
	15:10~15:25 (15')	[발표 ③] 장수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이 공공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조태연 대표이사 (주메이커스테크놀로지)
	15:25~15:40 (15')	[발표 ①], [발표 ②], [발표 ③]의 토론 좌장: 노경호 교수 (대림대학교) 토론: 성종수 박사 (한국표준협회) 노경호 교수 (대림대학교) 박주현 박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휴식	15:40~15:50 (10')	휴식
세 션 V	15:50~16:05 (15')	[발표 ①] 디지털자산 평가기준에 대한 고찰 박래천 부장 (㈜이글루코퍼레이션)
	16:05~16:20 (15')	[발표 ②] 동영상미디어 서비스 솔루션 및 응용사례 정인영 이사 (카테노이드㈜)
	16:20~16:35 (15')	[발표 ③] 포털 사이트 내 가짜뉴스 문제의 해결방안 양창규 교수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16:35~16:50 (15')	[발표 ①], [발표 ②], [발표 ③]의 토론 좌장: 양창규 교수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토론: 신영락 본부장 (한국중소벤처디지털혁신협회) 강호준 교수 (서강대학교) 이신복 교수 (나사렛대학교)
세 션 VI	15:50~16:05 (15')	[발표 ①] 가업승계지원제도의 이해 서진우 본부장 (정엘의 가업승계연구소)
	16:05~16:20 (15')	[발표 ②] 가업승계 특례적용의 어려움과 시사점 김용준 본부장 (정엘의 가업승계연구소)
	16:20~16:35 (15')	[발표 ③] 가업승계지원 관련 예규, 판례 검토 김태양 지점장 (정엘의 가업승계연구소)
	16:35~16:50 (15')	[발표 ①], [발표 ②], [발표 ③]의 토론 좌장: 박천경 교수 (경희대학교) 토론: 조만수 세무사 (세무회계법인 진성) 이채영 세무사 (세무회계법인 성연) 박시현 세무사 (이로운 세무회계법인)
세 션 VII	15:50~16:05 (15')	[발표 ①] 가족기업의 자발적 IR커뮤니케이션 활동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소유구조의 조절효과, ESG의 매개효과 이지연 박사과정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16:05~16:20 (15')	[발표 ②] 가족기업과 비가족기업의 소유구조와 재무 요인이 ESG성가에 미치는 영향 : 지속가능경영보 고서 공시의 조절효과 전덕영 책임전문위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 (중소기업중앙회)
	16:20~16:35 (15')	[발표 ③] ESG 경영과 유통, 마케팅전략의 방향성: 시몬스침대의 성장과정 전기수 박사과정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16:35~16:50 (15')	[발표 ①], [발표 ②], [발표 ③]의 토론 좌장: 라정주 원장 (파이터치연구원) 토론: 금득규 교수 (유한대학교) 라정주 원장 (파이터치연구원) 채연근 박사 (징코스테크놀러지)
휴식	16:50~17:00 (10')	휴식
이 사 회 및 총 회	17:00~17:20 (20')	연구윤리 교육 [교육 내용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교육 내용 2]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호서대학교)

		[교육 내용 3]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한양대학교)
	17:20~17:50 (30')	이사회 및 총회 보고안건 - 경과보고, 사업보고, 결산보고 이사회 및 총회 의결안건 - 가족기업 학술상 및 가족기업경영대상 시상 규정 개정의 건 - 감사선임

8) 2023년도 대외 학술활동

- 05. 16. 한국기업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 참석
- 06. 22. 제2회 중소벤처기업연구 통합학술대회 참석
- 08. 16.~08. 18. 제25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참석
 - ▶주최 : 한국경영학회(38개 학회가 공동주체)
 - ▶주제 : 글로컬 혁신생태계와 지역혁신의 미래
 - ▶장소 : 부산 BEXCO

9) 학술연구 사업

임원 및 회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결산보고(중소벤처기업부 보고)

2023년 수지결산서 (2023.01.01.~2023.12.31.)

(단위: 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인원	계	항 목	금 액	비고
1. 전기이월			13,394,189	1. 행사비용	28,466,240	
				1) 춘계학술대회	18,695,540	
				(1) 자료집	3,681,100	
				(2) 발표수당	4,708,300	
				(3) 현수막, 홍보, 기념품 외	7,277,840	
				(4) 점심, 음료 외	3,028,300	
				2) 포럼(7회)	421,500	
				3) 학술지발간(제2권 1호)	9,349,200	
2. 회비 수입			38,443,000	2. 사무국관리비용	10,458,145	
1) 입회비			1,380,000	1) 사무용품 등 운영비	2,477,800	
2) 연회비			1,363,000	2) 주민세 외	98,000	
3) 평생회비			2,700,000	3) 법무 및 증빙비용	408,880	
4) 기관회비			33,000,000	4) 홈페이지 관리	5,257,665	
				6) 출장비	258,300	
				7) 세무보고기장	1,155,000	
				8) 회원경조사	802,500	
3. 임원분담금			14,150,000	3. 이월	27,079,724	
1) 임원분담금			14,150,000	1) 일반 통장	27,079,724	
4. 기타			16,920			
1) 이자수입 등			16,920			
합계			66,004,109	합 계	66,004,109	

□ 결산보고

1.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보고 : 2023.1.1.~2023.11.14. 감사결과는 2023년 11월 30일 이사회 및 총회에서 보고 및 승인
2. 학회일반 예금통장(신한은행) : 27,079,724원(2023년 12월 31일 현재)
3. 2023년 추계학술대회, 학술지발간(제2권 2호) 비용은
2024년 1월 집행. 집행 후 1월 31일 현재 잔액 18,456,104원
4. 2024년 추계학술대회 때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를 받아 결과 보고 예정

IV. 회비 및 임원 분담금 현황

1. 회비 집계표(2023.1.1.~2023.12.31.)

회비 집계표(2023.1.1.~2023.12.31.)

(단위: 원)

구분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임원분담금	기관회비	계
상반기	1,110,000	1,133,000	1,800,000	5,800,000	15,000,000	24,843,000
하반기	270,000	230,000	900,000	8,350,000	18,000,000	27,750,000
계	1,380,000	1,363,000	2,700,000	14,150,000	33,000,000	52,593,000

2. 평생회비 납입명세서(2021~2023)

- 2021년 10명, 2022년 8명, 2023년 9명 누계 27명

연도	회원명
2021	남영호, 윤병섭, 박근서, 이종덕, 송덕근, 고경일, 노희구, 김진욱, 김지희, 김도현
2022	하태관, 김기형, 김관용, 황조익, 조병선, 조남철, 문용갑, 김병진
2023	김철훈, 강신우, 채희주, 이현수, 정용태, 백준성, 이지연, 백주민, 박원일

3. 회원가입 및 입금계좌 안내

1) 회원가입

- 정관에 의함

제 6 조 (정회원의 자격)

정회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절차를 행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1. 대학에서 가족기업분야의 학술활동 및 이와 관련된 인접학문을 연구, 강의하는 자
2. 공인 연구소에서 가족기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
3. (가족)기업체의 중견간부 이상인 자
4.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생 중 가족기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연구영역을 전공하는 자

제 7 조 (준회원의 자격)

준회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절차를 필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1. 가족기업 및 이와 관련된 분야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2.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 중 가족기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연구영역을 전공하는 자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

제 8 조 (특별 회원 및 기관회원의 자격)

1. 특별회원은 본회의 사업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로 입회절차를 행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 기관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계속하여 찬조나 출연을 하는 기관(단체 포함)으로 하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입회절차를 행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1) 각 대학 도서관 및 기업체
 - 2) 가족기업 및 이와 관련된 기관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

2) 회비 안내

회비구분		입회비(원)	회비(원)	
			연회비	평생회비
정회원(준회원)		30,000	30,000	－
평생회원		30,000	－	300,000
임원 기여금	회장	500,000	[입금계좌] 신한은행 100-035-176912 (사)가족기업학회	
	부회장	300,000		
	산학부회장	300,000		
	상임이사	100,000		
	이사	50,000		
기관 회원	도서관 연구소	50,000	100,000	1,000,000
	기관회원 C	연회비 1,000,000		입회비 없음
	기관회원 B	연회비 5,000,000		
	기관회원 A	연회비 10,000,000		
	기관회원 S	연회비 20,000,000		
명예회원		100,000	100,000	1,000,000
비고		신규 정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를 함께 납부해야 하며 기존정회원이 평생회원으로 전환할 경우 가입비는 면제됩니다.		

- 기정기부금단체로 지정돼 연말정산시 공제됩니다.

3) 입금계좌 안내

- 가족기업학회의 회비납부는 아래 계좌를 이용하여 각각 입회비, 연회비, 심사비, 게재료 등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입금계좌] 신한은행 100-035-176912 (사)가족기업학회

- 무통장 송금시 송금자의 성명과 내용이 통장에 기재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 홍길동 입회비, 홍길동 연회비, 홍길동 심사료, 홍길동 게재료 등)

V. 의결안건

의안 1. 『가족기업 학술상 및 가족기업경영대상 시상 규정』

일부 개정의 건

- 발표논문 편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가족기업학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연구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우수발표논문상의 격을 구분하고 수상 편수를 늘리고자 『가족기업 학술상 및 가족기업경영대상 시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함.

현행	개정(안)	비고
제3장 우수논문발표상	제3장 우수발표논문상	자구조정
제3조(종류) ----- 1. ----- 2. 우수논문발표상 3. -----	제3조(종류) ----- 1. ----- 2. 우수발표논문상 3. -----	자구조정
제8조(대상자) 춘계 및 추계 학술발표대회에서 가족기업 관련 이론, 실증, 사례 등 가족기업연구 발전에 기여한 발표논문 중 가장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제8조(대상자) 춘계 및 추계 학술발표대회에서 가족기업 관련 이론, 실증, 사례 <u>등과 경영학 분야에서 학회 발전에 기여한 우수발표논문을</u> 선정하여 시상한다.	자구조정
제9조(심사) 춘계 및 추계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중 우수논문발표상의 심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우수논문발표상의 심사는 포상위원회에서 행한다. 2. 우수논문발표상 포상위원회의 구성은 회장이 위원을 위촉하되, 그 인원은 7명 이내로 한다. 3. 춘계 및 추계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중 가장 우수하게 발표한 논문 1편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우수한 논문이	제9조(심사) ----- <u>우수발표논문상의</u> ----- 1. <u>우수발표논문상의</u> ---- 2. <u>우수발표논문상</u> ----- 3. 춘계 및 추계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중 <u>각 대회에서 최우수발표논문상 1편, 우수발표논문상 2편을</u> 선정한다. 그러나 우수한	자구조정 자구조정 발표논문상의 격을 구분하고 수상 편수 증가

없을 경우 시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4. 필요에 따라 이론, 실증, 사례 등 범주별로 우수발표 논문을 선정할 수 있다.	논문이 없을 경우 시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4. 필요에 따라 이론, 실증, 사례 등 범주별로 우수발표 논문을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0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의안 2. 감사선임의 건

임기만료 감사 박근서(성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Ⅵ. 임원 현황과 임원 위촉

1. 임원 현황

구분	회장	부회장	산학 부회장	상임 이사	이사	감사	계
정원(명)	1	50	50	50	100	2	253
현원(명)	1	45	32	23	69	2	172

2. 임원 위촉

[이사]

연번	이름	위촉직위	소속	비고
1	권성우	부회장	고려대학교	
2	권홍순	부회장	대덕대학교	
3	김계수	부회장	세명대학교	

4	김기형	부회장	한양대학교	
5	김소형	부회장	상지대학교	신임
6	김지희	부회장	Canisius College	
7	김창봉	부회장	중앙대학교	신임
8	김창완	부회장	계명대학교	
9	김태성	부회장	충북대학교	
10	동학림	부회장	호서대학교	신임
11	라정주	부회장	파이터치연구원	
12	박경미	부회장	농협대학교	
13	박래수	부회장	숙명여자대학교	신임
14	박주현	부회장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15	박천경	부회장	경희대학교	신임
16	송병호	부회장	건국대학교	
17	심준섭	부회장	경운대학교	
18	심충진	부회장	건국대학교	
19	양창규	부회장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신임
20	위정범	부회장	경희대학교	신임
21	유병준	부회장	서울대학교	
22	유시용	부회장	중앙대학교	
23	유재원	부회장	승실대학교	
24	윤성만	부회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5	이경우	부회장	국제사이버대학교	
26	이상휘	부회장	경희대학교	
27	이영한	부회장	서울시립대학교	신임
28	이일한	부회장	중앙대학교	신임
29	이철규	부회장	건국대학교	
30	임 일	부회장	연세대학교	신임
31	임효창	부회장	서울여자대학교	신임
32	장석주	부회장	호남대학교	신임
33	전규안	부회장	승실대학교	신임
34	전상길	부회장	한양대학교	신임
35	전종근	부회장	한국외국어대학교	신임

36	정기만	부회장	한국교통대학교	
37	정용태	부회장	계명문화대학교	
38	조규호	부회장	서원대학교	
39	조영석	부회장	목포대학교	
40	조종래	부회장	중소벤처기업부	신임
41	최종인	부회장	한밭대학교	
42	하태관	부회장	호서대학교	
43	홍길표	부회장	백석대학교	신임
44	홍재범	부회장	부경대학교	
45	홍재원	부회장	경상국립대학교	신임
46	강만수	산학부회장	하이퍼리서치	
47	강무성	산학부회장	반포자이행복한부동산	
48	고혜진	산학부회장	고원니트	
49	김권수	산학부회장	경남개발공사	
50	김병구	산학부회장	이노제이에스	
51	김병진	산학부회장	성보촌	
52	김선화	산학부회장	에프비솔루션	
53	김소희	산학부회장	드림오피스	
54	김승훈	산학부회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55	문용갑	산학부회장	갈등조정연구원	
56	박은홍	산학부회장	영창실리콘	
57	박준현	산학부회장	신영관세사사무소	
58	박찬명	산학부회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59	백준성	산학부회장	세무법인온지	
60	서영택	산학부회장	대진실업	
61	서정태	산학부회장	한국ESG지원센터	
62	성종수	산학부회장	한국표준협회	신임
63	신상철	산학부회장	중소벤처기업연구원	
64	오철수	산학부회장	서울경제신문	
65	원종인	산학부회장	비즈니스포커스	
66	유경하	산학부회장	서전엔지니어링	
67	이응훈	산학부회장	한컨설팅그룹	

68	정선의	산학부회장	정엘의 가업승계연구소	신임
69	정한규	산학부회장	능률협회컨설팅	
70	조병선	산학부회장	한국가족기업연구원	신임
71	차재영	산학부회장	한백세무회계사무소	
72	채연근	산학부회장	징코스테크놀러지	
73	최봉길	산학부회장	최봉길세무사사무소	
74	추문갑	산학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75	허동현	산학부회장	선진이앤에스	
76	허호영	산학부회장	오스텍	
77	황조익	산학부회장	드림이앤씨	
78	곽원준	상임이사	송실대학교	
79	곽지영	상임이사	세명대학교	신임
80	권준화	상임이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81	김성태	상임이사	동의대학교	
82	노경호	상임이사	대림대학교	
83	노민선	상임이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84	박상문	상임이사	강원대학교	
85	박재성	상임이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86	박준우	상임이사	청주대학교	
87	백 강	상임이사	한밭대학교	신임
88	서경란	상임이사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신임
89	송덕근	상임이사	건국대학교	
90	심현숙	상임이사	배화여자대학교	신임
91	유한수	상임이사	극동대학교	
92	이기은	상임이사	대구대학교	신임
93	이미순	상임이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94	이종덕	상임이사	서울바이오시스	
95	이지연	상임이사	퀀스스피치	
96	임성욱	상임이사	대진대학교	신임
97	임승중	상임이사	중소기업중앙회	
98	임옥빈	상임이사	한성대학교	신임
99	장수덕	상임이사	한남대학교	

100	최영근	상임이사	건국대학교	
101	강승완	이사	가천대학교	
102	강신우	이사	명성세무컨설팅	
103	고경일	이사	코칭경영원	
104	곽세영	이사	청주대학교	
105	곽지영	이사	세명대학교	
106	권택호	이사	충남대학교	신임
107	금득규	이사	유한대학교	
108	김경훈	이사	(주)에이앤지테크	신임
109	김노태	이사	포스코	
110	김석수	이사	산업현장교수단	
111	김용기	이사	유창이앤씨	
112	김용재	이사	(주)골드스톤파트너즈	신임
113	김우종	이사	중앙대학교	
114	김은준	이사	기업은행	
115	김정항	이사	기술보증기금	
116	김찬호	이사	우진엔택	
117	김철훈	이사	유안타증권	
118	김형중	이사	기업은행	
119	남우진	이사	세무방송	
120	남호일	이사	필립상사	
121	노밝은	이사	서울기독대학교	
122	류준열	이사	서울시립대학교	
123	박규호	이사	(주)카미노	신임
124	박미희	이사	용인예술과학대학교	
125	박래천	이사	이글루코퍼레이션	신임
126	박우석	이사	올인닷컴	
127	박재희	이사	University of North Florida	
128	서미순	이사	움직이는수학교실수업	
129	서병진	이사	웰빙뉴스	
130	손종률	이사	디자인오감	
131	신현주	이사	IBK컨설팅	

132	양지연	이사	수원대학교	
133	여철기	이사	굿스타트파트너스	
134	오랑거	이사	몽골 UFE(금융경제대학)	
135	오성주	이사	(주)메가기업지원센터	신임
136	이명섭	이사	에스엠하이테크	신임
137	이상엽	이사	경상국립대학교	
138	이성무	이사	동국대학교	
139	이윤상	이사	Georgia주 Columbus State University	
140	이을터	이사	군산대학교	
141	이의복	이사	글로벌리더십경제교육센터	
142	이재열	이사	기업은행	
143	이진화	이사	대구대학교	
144	이창대	이사	목포대학교	
145	이현수	이사	엑셀리스코리아	
146	임진혁	이사	경기대학교	
147	장은록	이사	중국 Yancheng Institute of Technology	
148	장 책	이사	강남HRS(본사: 중국 상하이)	
149	전기수	이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150	전대봉	이사	와이티피	
151	전덕영	이사	서울신용보증재단	
152	전지연	이사	JY학원	
153	정도영	이사	한화갤러리아	
154	정인영	이사	카테노이드	신임
155	정재현	이사	동아대학교	
156	정준희	이사	대구대학교	
157	정혜윤	이사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158	조남철	이사	세무법인 넥스트	
159	조태연	이사	메이커스테크놀로지	
160	진기방	이사	세스코	
161	채희주	이사	채희주세무회계사무소	
162	최다인	이사	조선대학교	
163	최보람	이사	조선대학교	

164	최석호	이사	IBK기업은행	신임
165	최 영	이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신임
166	최요한	이사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167	황윤도	이사	디자인뉴	
168	허강수	이사	건국대학교	
169	황 연	이사	건국대학교	

[감사]

연번	이름	위촉직위	소속	비고
1	박근서	감사	성현회계법인	임기만료
2	송덕근	감사	건국대학교	

3. 위원회 현황

연구윤리위원회

연번	직책	성명	소속기관	비고
1	위원장	심충진	건국대학교	
2	위원	강승완	가천대학교	
3	위원	곽원준	숭실대학교	
4	위원	김계수	세명대학교	
5	위원	노경호	대림대학교	
6	위원	정준희	대구대학교	

산학협력위원회

연번	직책	성명	소속기관	비고
1	위원장	서영택	대진산업	
2	위원	김병진	정보촌	
3	위원	유경하	서전엔지니어링	
4	위원	변우석	코맥스	
5	위원	허동현	선진이앤에스	
6	위원	황조익	드림이앤씨	

홍보위원회

연번	직책	성명	소속기관	비고
1	위원장	유병준	서울대학교	
2	위원	김소희	드림오피스	
3	위원	김철훈	유안타증권	
4	위원	박은홍	영창실리콘	
5	위원	박찬명	신용보증재단중앙회	
6	위원	박천경	경희대학교	

포상위원회

연번	직책	성명	소속기관	비고
1	위원장	권홍순	대덕대학교	
2	위원	김병구	이노제이에스	
3	위원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4	위원	심준섭	경운대학교	
5	위원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6	위원	정용태	계명문화대학교	
7	위원	하태관	호서대학교	

Ⅶ. 상장수여

- 『가족기업 학술상 및 가족기업경영대상 시상 규정』에 의거 포상위원회가 선정한 최우수 논문상, 최우수 논문발표상, 우수 논문발표상을 수여함
- 최우수 논문상은 『가족기업연구』 제2권 제1호에 게재된 5편 중 1편을 선정
- 최우수 논문발표상, 우수 논문발표상은 금번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된 12편에서 각각 1편씩 선정
- 포상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됨
 - ▶위원장 권홍순(대덕대학교 교수)
 - ▶위 원 김병구(이노제이에스 대표), 라정주(파이터치연구원장), 심준섭

(경운대학교 교수), 윤성만(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정용태(계명
문화대학교), 하태관(호서대학교 교수)

VIII. 공지사항, 회원동정 및 기타 논의사항

1. 학회장 관련 사항

2. 공지사항

1) 『가족기업연구』 논문 투고 독려(제3권 1호)

2) 홈페이지 방문 독려: 게재논문 활용

3) 회원 배가 운동

3. 회원동정

오는 6월호 뉴스레터 답을 내용 보내주기

4. 기타 논의사항

IX. 폐회

[별첨 1] 『가족기업 학술상 및 가족기업경영대상 시상 규정』 (전문)

『가족기업 학술상 및 가족기업경영대상 시상 규정』

제정 2023년 04월 27일, 이사회 의결
일부개정 2024년 04월 25일, 이사회 의결

제1장 총칙

제1조(준거) 이 규정은 본 학회의 정관 제4조(사업)에 준거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 가족기업 학술상 및 가족기업경영대상(이하 '학술·경영대상'이라 칭한다)은 가족기업경영 분야에서 경영이론 및 경영실무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학자와 경영인의 업적을 인정하고 격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종류) 학술·경영대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우수논문상
2. 우수발표논문상
3. 가족기업경영대상

제4조(시상) 시상은 상장과 상패, 부상의 형태로 한다.

제2장 우수논문상

제5조(대상자) 최근 6개월 간의 『가족기업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 가족기업 관련 이론, 실증, 사례 등 가족기업연구 발전에 기여한 논문 중 가장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제6조(심사) 가족기업연구 우수논문상의 심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우수논문상의 심사는 별도의 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2. 우수논문상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회장이 위원을 위촉하되, 그 인원은 7명 이내로 한다.
3. 춘계 및 추계 학술발표 직전 6개월 간 『가족기업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 가장 우수한 논문 1편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우수한 논문이 없을 때 시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4. 필요에 따라 이론, 실증, 사례 등 범주별로 우수논문을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시상시기) 우수논문상은 춘계 및 추계 학술발표대회 때 시상한다.

제3장 우수발표논문상

제8조(대상자) 춘계 및 추계 학술발표대회에서 가족기업 관련 이론, 실증, 사례 등과 경영학 분야에서 학회 발전에 기여한 우수발표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제9조(심사) 춘계 및 추계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중 우수발표논문상의 심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우수발표논문상의 심사는 포상위원회에서 행한다.
2. 우수발표논문상 포상위원회의 구성은 회장이 위원을 위촉하되, 그 인원은 7명 이내로 한다.
3. 춘계 및 추계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중 각 대회에서 최우수발표논문상 1편, 우수발표논문상 2편을 선정한다. 그러나 우수한 논문이 없을 경우 시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4. 필요에 따라 이론, 실증, 사례 등 범주별로 우수발표논문을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시상시기) 우수논문발표상은 춘계 및 추계 학술발표대회 폐회 직전에 시상한다.

제4장 가족기업경영대상

제11조(대상자) 이 상은 산업, 경제, 경영 등 제 부문에서 가족기업을 경영하는 국내외의 기업인을 대상으로 가족기업경영 발전의 공로자에게 수여한다.

제12조(시상원칙) 이 상은 산업, 경제, 경영 등 제 부문에서 리더십과 투명성, 그리고 경영능력을 갖추고 가족기업경영의 발전으로 사회적 모범이 되는 가족기업경영인에게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전형기준) 가족기업경영대상의 전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가족기업경영의 합리화 및 혁신경영
 - ① 적정성장률(매출액, 당기순이익)
 - ② 경영전략
 - ③ 혁신경영
 - ④ 생산성향상
2. 가족기업경영이념 및 기업윤리경영 실천
 - ① 가족기업경영이념 및 기업경영철학
 - ② 가족기업윤리강령 실천
 - ③ 사회적 책임 및 환경개선공헌도
 - ④ 노사관계 및 이해관계자조정도
 - ⑤ 정도경영(가족기업경영투명성 및 회계·재무의 정도관리)
3. 가족기업경영자의 인품과 덕망
 - ① 혁신성
 - ② 리더십
 - ③ 성실성

- ④ 인간존중
- ⑤ 책임성
- 4. 기타 경영능력

제14조(가족기업경영대상 포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가족기업경영대상의 수상자 선정을 위해 대상 포상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 회장단 연석회의에서 학계, 산업계, 언론계, 기타의 인사 중 경륜이 높고 신망이 두터운 분을 추천하되, 그 구성원은 7명으로 한다. 단, 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된다.
2. 가족기업경영대상의 심사를 위해 회장은 1명의 간사를 임명한다.
3. 가족기업경영대상 포상위원회는 가족기업경영대상 수상후보자의 신청서, 추천서, 기타 수상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4. 가족기업경영대상 수상(후보)자는 본 학회 상임이사회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가족기업경영대상 수여) 가족기업경영대상 수상자에게는 공적을 기리는 내용의 상패와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한다. 단, 대상은 산업별, 기업별 등 부문별로 수상할 수 있다.

제16조(시상시기) 가족기업경영대상은 매년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기는 나누어 수여할 수 있다.

제17조(기타 준거)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 본 학회 회장단과 대상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24년 0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시행 2022. 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2호, 2022. 1. 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제도혁신과), 044-202-695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 "연구개발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3. "연구자"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연구노트"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연구노트로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하여 얻은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5. 삭제
6. 삭제
7. "기록자"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8. "확인자"란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지침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적용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연구개발에 대하여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조(정부의 역할과 책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보급·홍보 및 중요성에 관한 교육 등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개발기관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이 지침을 활용하여 연구노트의 작성·보관·관리에 관한 자체규정(이하 "자체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제공 등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과제 관리, 연구개발의 연속성 유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하여야 하며, 연구자를 통제할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노트의 요건) ① 연구노트의 요건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기록 날짜와 기록자, 그리고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록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서면, 전자노트, 음성, 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노트의 작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노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당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개인사업자, 창업초기기업 등 연구노트를 관리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나, 사전조사·기획평가, 연구개발과제의 조정·관리, 인문·사회분야,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같은 항에 따른 단계보고서를 포함한다)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

④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다수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마다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별로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게 하거나, 하나의 연구노트를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기록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 내용의 위조·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제3자가 연구개발 수행 과정과 결과를 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노트에 대한 권리의 소유) ① 연구노트에 대한 권리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구노트의 작성을 관리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다.

② 그 밖에 연구노트에 대한 권리의 소유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에 따른다.

제10조(연구노트의 보관 및 관리) ① 연구노트를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 작성지원, 보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지정·운영 및 연구 중단 또는 종료 시 연구노트 관리 방안 등을 자체 규정으로 마련해야 한다.

③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로부터 30년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유형별로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연구노트의 열람 및 공개)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연구노트 열람대상과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자 등이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자가 해당 연구노트 열람을 요청한 경우에는 열람대상과 범위 등에 제한 없이 열람권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 열람에 관하여 관리대장을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노트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성과 제출,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연구자보호(부정의심행위의 검증을 포함한다), 지식재산권 출원·보호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에 연구노트의 사용을 요청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연구노트 사용권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연구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하는 연구노트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람·기관·단체에 누설·유출·양도·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연구노트의 폐기)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를 폐기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연구노트라도 기술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13조(연구노트 관리 실태점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102호, 2022. 1.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호서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교 소속 교원, 연구원, 학생 및 본교 내 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에 대하여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적용한다. (개정 2013. 7. 22, 2017. 6. 1)

1. 「학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4에 따른 교육부 소관 기초연구사업 및 특정연구개발사업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분야
- ② 자체의 연구 활동, 교육부 이외의 국가기관 및 국가 이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제의 연구윤리 문제에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자체의 연구 활동’이란 학위논문 발표, 대학 및 전문기관의 자체 예산으로 수행되는 연구 등을 포함하고, ‘교육부 이외의 국가기관 및 국가 이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제’란 교육부를 제외한 국가기관, 기업 및 민간단체로부터 수탁 받은 연구 등을 포함한다.(신설 2017. 6. 1, 개정 2022. 2. 8.)

제 3 조 (적용범위) 연구개발의 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의 전범위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7. 6. 1)

제 4 조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 7. 22, 2017. 6. 1)

1.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2.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3.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4.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5. <삭제 2017. 6. 1>
6. <삭제 2017. 6. 1>
7. <삭제 2017. 6. 1>
-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여,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

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목개정 2017. 6. 1]

제 4 조 의 2(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특수관계인이 연구과제 및 연구결과물에 참여할 경우, 신고의 의무
11.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조 신설 2022. 2. 8>

제 4 조 의 3(대학의 역할과 책임)

1. 대학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 대학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2. 2. 8>

제 2 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 5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7. 6. 1)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판정, 승인 및 재심의를 관한 사항
3.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7. 22)
4. <삭제 2013. 7. 22>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6.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 6 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의 당연직위원과 6인의 추천직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7. 22, 2017. 6. 1)

② 위원장은 학사부총장으로 한다. (개정 2013. 7. 22)

③ 학사부총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전임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 7. 22, 2017. 6. 1)

④ <삭제 2017. 6. 1>

⑤ <삭제 2017. 6. 1>

⑥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7. 6. 1)

제 7 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7. 22)

③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개정 2013. 7. 22, 2017. 6. 1)

④ <삭제 2017. 6. 1>

⑤ 위원회의 각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3. 7. 22)

제 8 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개정 2017. 6. 1)

제9조 (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산학협력단 연구팀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2, 2017. 6. 1)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13. 7. 22)

[제목개정 2017. 6. 1]

제9조의 2(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신설 2017. 6. 1)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

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본조신설 2017. 6. 1]

제10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2)

② 해당 기관의 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때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신설 2013. 7. 22)

③ 해당 기관의 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제14조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3. 7. 22)

④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항 변경 2013. 7. 22, 개정 2017. 6. 1)

1. 제보내용이 제9조의 2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삭제 2013. 7. 22>

⑤ 예비조사는 산학협력단 연구팀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5인 이내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중 1명을 조사위원장으로 지명한다. (항 변경, 개정 2013. 7. 22, 2017. 6. 1)

제11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17. 6. 1)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3. 조사결과 (개정 2013. 7. 22)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신설 2013. 7. 22)

5.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신설 2013. 7. 22)

6. 기타 관련 증거 자료 (항 변경 2013. 7. 22)

제12조 (본조사)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7. 6. 1>

③ <삭제 2017. 6. 1>

④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신설 2017. 6. 1)

[제목개정 2017. 6. 1]

제13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본조사를 위해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 중 1명을 조사위원장으로 지명한다. (개정 2013. 7. 22, 2017. 6. 1)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50%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인의 비율을 30%이상 위촉한다.(개정 2013. 7. 22, 2017. 6. 1)

1)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삭제 2017. 6. 1>

제13조의 2(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신설 2013. 7. 22) ① 조사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7. 6. 1)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체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② 피조사자 및 제보자는 조사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제척을 결정할 수 있으며, 제 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있을 경우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④ 조사 위원은 제 1항 또는 2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나머지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개정 2017. 6. 1)

⑤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신설 2017. 6. 1)

제14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2)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2)

제15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 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1)

③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개정 2017. 6. 1)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총장과 관계 교직원 등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7조 (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13. 7. 22)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개정 2013. 7. 22)
4.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개정 2013. 7. 22)
5. 조사결과 및 이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개정 2013. 7. 22)
6. 조사위원회 위원 명단 (개정 2013. 7. 22)
7. 검증결과에 따른 처분요구결과 (신설 2013. 7. 22)

제18조 (판정) ① 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3. 7. 22)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 심의 후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 6. 1)

제18조의 2(이의신청 등) (신설 2013. 7. 22)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 4 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9조 (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2, 2017. 6. 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이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0조 (결과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총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2, 2017. 6. 1)

1. 연구부정행위 (신설 2013. 7. 22, 개정 2017. 6. 1)
2.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신설 2013. 7. 22)

② 총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관련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21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산학협력단 연구팀에서 보관하여,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1)
-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5 장 기 타

제22조(경비) 위원회의 운영과 연구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연구진실성검증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국가의 연구진실성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25조(예외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상위법을 준용한다.(신설 2017. 6. 1)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2. 8.)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정일 : 2006년 11월 07일

개정일 : 2017년 10월 12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한양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교내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연구자와 직원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 :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 다음 각 목에 대하여,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또는 창작물을, 그 내용이 출판, 학술발표, 개인교신 등의 형식으로 공적으로 확인 가능한 상황에서,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 : 다음 각 목의 행위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② 제보자 :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대학 또는 연구지원 기관에 알린 자
- ③ 피조사자 : 제보 또는 대학 및 연구지원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예비조사 :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

⑤ 본조사 :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

⑥ 판정 :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

[전문개정 2017.10.12.]

제3조의2(자신의 연구결과 사용)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연구논문 등 작성 시 이전에 발표하지 않은 자신의 연구결과를 사용
 2.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출간하여 본인의 연구결과 또는 성과·업적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3.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용사실을 표시하거나, 처음 게재한 학술지 등의 편집자 또는 발행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
- [본조신설 2011.8.10.]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심의, 의결한다.

1. 연구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결정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대한 사항
3. 예비조사위원 및 본조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4. 재심의 요청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6. 연구 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장 설치 및 운영

제5조(구성 등)

- ① 위원회는 서울캠퍼스와 ERICA캠퍼스에 별도로 구성한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교학부총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산학협력부단장 등의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ERICA캠퍼스의 경우 ERICA부총장, 교무처장, ERICA산학협력단장, ERICA산학협력부단장 등의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1.5., 2013.2.8., 2015.7.24.>
- ② 위원장은 서울캠퍼스는 교학부총장, ERICA캠퍼스는 ERICA부총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서울캠퍼스는 산학협력단장, ERICA캠퍼스는 ERICA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개정 2010.11.5., 2013.2.8.>
- ③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각 캠퍼스별 산학협력단 연구진흥팀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10.11.5., 2013.2.8.>

제7조(회의)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전문위원)

위원회의 필요한 경우, 각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9조(접수)

- ① 부정행위에 대한 접수는 연구진흥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0.11.5., 2014.6.13.>
- ②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6.13.>
- ③ 구체적인 연구위반 내용의 적시없이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검증하지 아니한다. 다만, 익명 제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가 적시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에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6.13.>

제10조(예비조사)

- ① 위원회는 관련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3인으로 구성된 예비조사 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1.8.10.>
- ② 예비조사위원은 조교수이상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 ③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착수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하며, 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정보(익명제보인 경우 예외)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관련 증거 자료
 5. 삭제 <2011.8.10.>
- ④ 해당 기관의 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신설 2011.8.10.>

제11조(본조사)

-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본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본조사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 및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8.10., 2017.10.12.>
 1.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 30% 이상
- ③ 본조사위원회는 조사착수후 90일 이내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하며,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정보(익명제보인 경우 예외)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 ④ 제3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조사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본조사위원회의 개별적인 조사활동 수행시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 등은 위원장 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2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①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시 총장에게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한다.
-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시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③ 위원회는 본교 구성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하여 진실에 어긋나는 제보를 하였을 시 총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의 상당한 제재조치 및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조(결과의 통지)

- ①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1.8.10.>
-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은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1.8.10.>

제14조(재심의)

-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서면으로 하여, 재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11.8.10.>
- ②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8.10.>

제4장 조사의 원칙

제15조(절차적권리보장)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주어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고지해 주어야 한다.

제16조(제척,기피,회피)

- ① 각 위원은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조사·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③ 위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사위원 명단을 알리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④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7.10.12.]

제17조(출석 및 자료요구)

- ① 조사시 필요에 따라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등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한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 ② 조사시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 보존을 위하여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의 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의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의 유지 등)

- ①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국가기관의 요구 등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③ 각 위원 및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총장 및 관계 교직원은 조사·심의·의결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 해야 하며,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9조(제보자 보호)

위원회는 교내 제보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보복행위에 대한 방지 조치와 보복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조치사항을 총장에게 건의한다.

제5장 기타

제20조(경비)

위원회의 운영과 연구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연구진실성검증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국가의 연구진실성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칙

부칙(2006.11.7. 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양대학교 학칙, 2009.12.5.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학칙 공포와 동시에 한양대학교 제규정상의 안산캠퍼스를 ERICA(에리카)캠퍼스로 변경한다.

부칙(2010.11.5.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8.10.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2.8.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14.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증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조사 대상의 검증시효기간 폐지에 따라 이 규정 제정일(2006.11.7) 이전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2014.6.13.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직제규정, 2015.7.24. 공포)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 ⑦ 연구진실성 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1항의 교무입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 ⑧부터 (18)까지 생략

부칙(2017.10.12.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4]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한양대학교)